

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985호
- 나. 발 의 자 : 아이수루 의원(찬성자 28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법률 개정에 따라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” 과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” 용어 정의를 변경함(안 제2조의제3호 및 제4호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2021.1.1.)되어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” 과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” 의 등록 등 관리·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업무의 이관(안 제2조의 3호, 4호)

- 동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등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임.

<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(개정 2020.2.18.) >

제6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)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. 다만,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.
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

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
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

3.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

- 관련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고, 지역별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으로 이해됨.
-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등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붙임 1**집행부 검토의견**의안번호
985**서울특별시 의료관광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아이수루 의원	2023. 8. 9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p>〈개정 필요성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정비 필요 <p>〈주요 입법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”과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” 용어 정의 변경 (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) 				
추진경과	○ 2023. 8. 9. 의원 발의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해당 없음				
대응방안	○ 해당 없음				
담당부서	관광산업과	팀장	박정욱(☎2133-2781)	담당	김선주(☎2133-2784)